



環境基準寸考

盧在植
〈本協會副會長〉
〈韓國에너지研究所首席專門委員〉



排出源이 별로 많지 않았던 옛날이나 한 두개 정도의排出源만이 드문 드문 있는 고장에서의環境污染管理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排出許容基準(Emission Standards)이라는規制方式을 취하였거나活用하는 예가 많으며 또 실제로 어떤 효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재빠른發展과 더불어 무수히 늘어난排出源에서 방출되는污染物을管理해야 하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排出된污染物의 개개濃度準位보다는污染物이排出된 그地域 및 인접지역의 당해 공간내에 實存하는污染物別濃度準位가 그污染物로 인해서 유발되는負的 영향을評價하고 또 최적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不可缺少의 중요因子가 되었다.

즉 짧은時間동안 이들污染物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 염려되는急性영향 및 비교적 오랜동안 이들污染物에 휩싸여 받게 될慢性영향 등을 두루 배려한 이론바環境基準(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을 설정함으로서 다루어야 마땅하다.

일반적으로污染物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되는時間이 짧을수록環境基準值는 높은 값으로 설정되며, 반대로 영향을 받는時間이 길수록基準值는 낮은 값으로 설정되기 일쑤인데, 이러한 사실은美國, 카나다, 스위스, 日本등 각국에서 오늘날 설정·시행중인環境基準값이 대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環境基準을 설정함에 있어서 가장理想的인 것은生活樣式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전혀有害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쾌적한環境 속에서生活을享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는點이다. 그러나 이처럼理想的인條件를 만족시킨 값으로 설정된 실례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공정한表現일 것이다.

그것은環境基準이라는 값 자체가 이 값을 적용코자 하는對象空間固有의環境容量(Environmental Capacity)의大小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으로 설정될 수도 있거니와生產性주의開發一邊倒 정책을 고집하려는政治的理由 등 그 나름대로의價值判斷基準에 차이가 있게 마련이므로條件이 다를 경우 높은 값으로 잡을 수도 있고, 또 낮은 값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開發途上國의環境基準이 일반적으로先進工業國의 그것보다 높은 값으로 설정되는 성향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오일달러로 富有的 몇몇 產油國을 제외하고는 대개 1인당 GNP가 높은 나라일수록環境基準이 낮게(즉 보다 엄하게) 설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아황산가스에 대한大氣環境基準인 경우 1인당 GNP가 1만달러 이상인 나라에서는 0.04ppm 이하(年平均值일때) 또는 0.14ppm 이하(24시간 平均值일때)로 설정하고 있으나, 1인당 GNP가 1만달러 미만인 나라에서는 각각 0.05ppm 이상(年平均值일때) 또는 0.15ppm 이상(24시간 平均值일때)의 값을 環境基準값으로 잡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開發途上國이나後進國의 國民이라 해서 각종環境污染에 대한耐性이 강한 것도 아

니고 그렇다고 해서 免疫이 된 것도 아니다. 간난과 짖주립에 시달리는 것만도 서러울 터인데 여기에 더하여 보다 더 나쁜 質의 공기와 물을 들이키거나 마시면서 살아야 한다니 참으로 不公正한 사정임에 틀림없다. 環境汚染問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조차 타브視 되었던 10 여년전만 하더라도 經濟成長을 이룩할 때까지는 公害같은 것들은 당분간 먹고 살아야 한다는 脆辨을 늘어놓던 成長優先論의 경제학자가 이 땅에도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말하자면 費用·便益分析에 있어서 便益의 真價를 度外視한 前產業社會의 發想이 亂舞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와서 이처럼 公正치 못한 현상이 實存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執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經濟成長과 더불어 物質的側面의 生活水準이 향상될 것임은 明若觀火하나 그럴수록 보다 더 쾌적한 生活環境을 바라는 存在가 바로 우리 人間인 만큼 이미 더럽혀진 오늘날의 環境을 되살리기 위한 科學的인 努力を 쏟아붓는데 우리 모두 주저치 말아야 마땅하리라 믿는다.

다시 말해서 각 개체가 共存하고 있는 環境의 質을 좋게 유지함에 있어서 어느 少數의 個體만이 절대적인 힘을 미칠 수 없는 것이 環境問題의 특성이기 때문에 社會를 구성하는 모든 個體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몸소 실천하는 길만이 중요하다고 통감하는 바이다.

필자가 이 欄을 통해서 環境基準이라는 問題를 다루고 있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環境汚染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環境의 本質을 익히 알아야 하며, 또 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環境基準이나 排出許容基準 자체가 合理性를 잃은 偏寄된 價值判斷에 바탕을 둔 채 잘못 설정되는 경우등 기준설정에 人爲的인 造作이 内在된다면 이 보다 더 못마땅한 것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必要에 따라서는 環境基準 등이 서로 달리 설정될 수도 있다는 點에 環境問題 자체가 內藏한 複雜性이 있는 것이다.

즉 한 나라안에서도 적용대상지역의 地形的·水文學的·氣候學的諸特性 때문에 地域에 따라 다소 다른 環境基準을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 앞서 언급한 바와 비슷이 적용대상기간의 長短(例: 平均濃度準位를 導出하는 통계기간 등)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값으로 설정될 수 있는 因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실례를 몇가지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 스위스에서는 煙房이 별로 필요치 않는 봄철부터 가을철까지(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즉 연료 연소에 의한 大氣汚染物이 적은 기간)의 아황산가스에 대한 環境基準은 낮은(즉 더 엄격하게) 欲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煙房으로 인한 아황산가스의 大量排出이 있을 겨울철(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까지)에는 다소 높은(즉 느슨한) 環境基準을 설정함으로서 國民에게 무리없고 합리적인 規制値를 마련해 주고 있다.

둘째, 터키의 아황산가스에 대한 環境基準은 주거지역에 대해서 0.1 ppm(24시간 平均值)으로 잡고 있으나 工場地域에 대해서는 이 보다 다소 느슨한 0.12 ppm으로 잡으므로써 웅통성있는 環境規制를 하고 있다.

이점 우리나라에서도 쾌적한 環境을 保全하고 環境汚染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環境基準을 설정토록 되어 있으며 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地域環境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環境廳長의 승인을 얻어 國家環境基準과는 다른 별도의 地域環境基準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실지로 大氣에 관한 環境基準으로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浮遊粉塵, 옥시단트 및 炭化水素 등 6개항목에 걸쳐 이미 설정한 바 있으며, 水質에 대한 環境基準 및 騒音에 대한 環境基準도 벌써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地域의 특수성을 고려한 地域環境基

準이 전혀 설정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얼마나 環境保全에 대해 무관심하고 또 성의가 부족했겠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점 放射能物質 또는 放射線 發生裝置 등에서 방출되는 放射線에 의한 障害問題와 관련된 最大許容被曝線量(Maximum Permissible Dose:MPD)과 最大許容濃度(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MPC)라는 量이 있는데 이 값들은 위에서 論한 環境基準과 유사한 성격의 量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임의의 放射線源에 대한 MPD나 MPC란 그러한 조건 하에서 30년 동안을 계속해서 살더라도 뚜렷한 身體上의 障害가 發生하지 않을 것이라고 判斷되는 값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MPD나 MPC는 신체적영향(somatic effect) 뿐만 아니라, 유전적영향(genetic effect)도 고려하였으며, 또 적용대상을 세개그룹으로 나누어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放射線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한 小兒·幼兒·胎兒 등을 포함한 集團人 全體(population at large)에 대한 값은 職業上 雇傭되고 있는 職業的인 放射線作業從事者(occupational radiation worker)에 대한 MPD나 MPC의 10분의 1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또한 특이하다.

그런데 얼마전부터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實行할 수 있는 한 가장 낮은 선량(As Low As Practicable: ALAP)” 그리고 최근에는 “합리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한 가장 낮은 선량(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이라는 人道的 次元의 概念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따라서 一般環境問題(非放射能)에서의 環境基準이나 排出許容基準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概念과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이며, 바로 이와같은 철학적 배경을 실지로 적용할 수 있는 날, 서로 다른 값으로 설정된 環境基準 自體의 모순도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環境廳이 마련한 제 5차 經濟社會發展 5개년계획 環境保全部門 실천계획에 의하면 低硫黃油 공급을 확대함으로서 SO₂에 의한 大氣汚染度를 훨씬 낮추겠다는 내용을 비롯해서 下水處理施設과 分뇨처리시설을 확충함으로서 河川汚染度(BOD)도 저감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海洋汚染度(COD) 및 驕音度(서울지방)도 낮추어 보겠다는 의욕이 대단하다.

그러나 國民에게 쾌적한 環境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環境基準과 排出許容基準間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點을 알아야 한다. 즉 쾌적한 環境에 대한 國民의 욕구도가 커질수록 보다 더 낮은 環境基準을 설정·유지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 排出源에서의 排出許容基準도 낮추어야 가능하다. 이 경우 그 逆도 成立함을 알아야 한다.

2천년대 우리나라를 쾌적한 環境으로 가꾸려면 점진적으로 보다 낮은 環境基準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政府의 의지가 國家 目標로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제정에 앞서 미리부터 立法豫告形式으로 公示하는 등). 또 政府內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環境目標에 순응하면서 經濟·社會發展計劃을 입안·추진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1인당 GNP가 2천달러로 될 것으로 展望되는 올해이다. 先進國의 그것과 비교할 때 아직도半커녕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水準의 오늘날의 우리이지만 나라의 經濟水準이 높아질수록 環境基準 값도 점점 낮추어야 한다는 大命題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어엿한 先進文化 國民으로서의 긍지를 과시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國力의 내실화와 環境改善를 위한 멋진 슬기의 收斂이先行되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環境基準을 설정함에 있어서 ALAP概念이나 ALARA概念이 우리나라에서 先昌되고 定着되는 날을 기대해 보면서 자위해 본다. *

會員入會案內

環境保全法 第61條의 規定에 依據設立된 本協會는 定한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會員入會를 권장하오니 아직도 參與하지 않고있는 방지시설업체 또는 배출업체는 빠짐없이 자신 參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會員의 資格

- 가. 環境管理技師會員 : 国家技術資格을 취득한 環境管理技師 1, 2 級 資格証所持者.
- 나. 排出業体会員 : 環境保全法 第15条의 規定에 依據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받은者.
- 다. 防止施設業會員 : 環境保全法 第47条의 規定에 依據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者.
- 라. 產業廢棄物處理業會員 : 環境保全法 第50条의 規定에 依據 廢棄物處理業許可를 받은者.
- 마. 環境保全関聯事業會員 : 防止機器類(防止藥品包含)製造 및 販売業者와 建設業조경等 其他 環境保全에 関聯된 事業체 또는 団体로서 理事会의 同意를 받은者.
- 바. 特別會員 : 本會發展에 現저한 공헌을 한 個人 또는 团体로서 理事会의 同意를 받은者.
- 사. 名譽會員 : 社會指導層 人事.

● 會員의 恵澤

- 가. 協会의 事業에서 얻은 調査研究 및 技術開發 結果를 利用 또는 活用할수있음.
- 나. 技術相談 提供
- 다. 海外 技術情報 提供
- 라. 技術教育 無料受講
- 마. 施工 設計, 研究調查 分析 評価 實費提供
- 바. 刊行物(環境保全協会報) 等 無料配付.

● 入會節次

協会 所定様式의 入会願書를 提出하여 (入会費外 年会費를 同時納付하여야함)理事회의 同意를 받음으로서 入会됨.

● 會 費

區 分	入会費	年会費	區 分	入会費	年会費
특별 會 員	10,000	15,000	防止施設業會員(上)	200,000	300,000
환경 관리 기사 회 원	2,000	4,500	" (下)	100,000	150,000
排出業体会員(1種)	100,000	150,000	産業廢棄物處理業會員	100,000	150,000
" (2種)	50,000	75,000	環境保全関聯事業會員	100,000	150,000
" (3種)	30,000	45,000			

● 入會願書 接受處

- 서울 : 本會事務局 (中区小公洞111) 753-7640, 753-7669
- 京畿 : 京畿道支部事務局 (水原商工会議所内) 6-1175
- 江原 : 江原道支部事務局 (春川商工会議所内) 52-4321
- 忠北 : 忠北道支部事務局 (清州商工会議所内) 3-0023
- 忠南 : 忠南道支部事務局 (大田商工会議所内) 253-9826
- 慶北 : 慶北道支部事務局 (大邱商工会議所内) 776-3585
- 慶南 : 慶南道支部事務局 (馬山商工会議所内) 57-4723
- 全北 : 全北道支部事務局 (全州商工会議所内) 6-3011~5
- 全南 : 全南道支部事務局 (光州商工会議所内) 2-6284~7
- 釜山 : 釜山支部事務局 (釜山商工会議所内) 463-7801~5
- 潘州 : 潘州道支部事務局 (潘州商工会議所内) 3-2164
- 仁川 : 仁川支部事務局 (仁川商工会議所内) 75-1840

社團
法人 環境保全協會